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6. 1.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5월 2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5월 26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5. 27)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재 政 經 濟 국 장 이 무 학)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허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3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50% 감면해 오던 것을 100%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개정 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에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과 관련,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수정허가된 부분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0 호
----------	---------

제출연월일 : 2009.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확대 (안 제13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아케이드 등 건축에 대해 현행 건축물 재산세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로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09. 3.19.~'09. 4. 7)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2005년 5월 2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2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p> <p>—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